

◎목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4-10호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년 11월 08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장 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상
우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00m 안의 해역)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외달도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80m 안의 해역)	
가마미해수욕장		1. 영광원전 방파제 측면 50m 안의 해역 2.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20m 안의 해역)	
대광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안의 해역)	
홀통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20m 안의 해역)	
톱머리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70m 안의 해역)	
가계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20m 안의 해역)	
금갑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70m 안의 해역)	
관매도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80m 안의 해역)	
진도대교	연중	다음 각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진도대교 기준 좌측·우측 300m 안의 해역) ①34-34.12N 126-18.36E ②34-34.25N 126-18.51E ③34-34.49N 126-18.23E ④34-34.37N 126-18.10E	모든 수상레저 기구

<p style="text-align: center;">대반동 유달유원지</p>	<p style="text-align: center;">연중</p>	<p>다음 각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유달유원지 중간지점으로부터 약 93m 안의 해역)</p> <p>①34°47.30N 126°21.94E ②34°47.28N 126°21.93E ③34°47.16N 126°22.04E ④34°47.16N 126°22.06E</p>	<p style="text-align: center;">모든 수상레저 기구</p>
--	---------------------------------------	---	---

2. 문의처: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우전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우전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외달도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8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외달도해수욕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가마미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영광 원자력 발전소 방파제 측면 50m,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220m 지점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마미해수욕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대광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광해수욕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홀통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12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홀통해수욕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톱머리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7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톱머리해수욕장



가계해수욕장



금감해수욕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관매도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20m 지점까지  
수영경계선 미설치 시 해안선으로부터 8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매도해수욕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진도대교 수로
- (기간) 연 중
- (구역) 진도대교 기준 좌우측 30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영경계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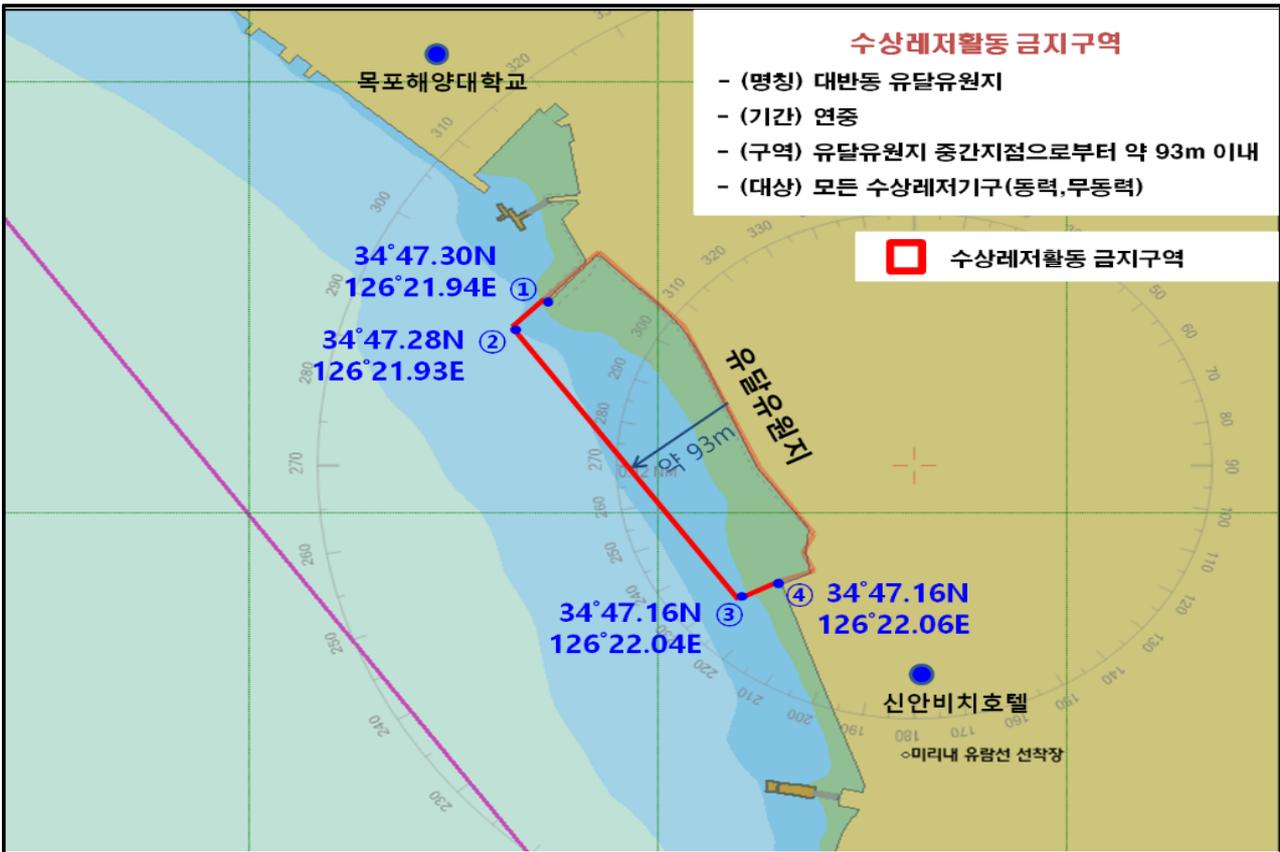


진도대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대반동 유달유원지
- (기간) 연중
- (구역) 유달유원지 중간지점으로부터 약 93m 이내
- (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동력,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반동 유달유원지